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주민자치 공약분석을 위한 질의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경쟁하는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이해와 정책개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 답변 내용은 월간주민자치와 유효한 방법을 통하여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 1. 후보자

지역구	정당	후보자명
서울 영등포구 갑	정의당	정재민

### 2. 주민자치에 대한 기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의 필요성/중요성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  
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단체자치 측면만 제도화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민자  
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요소이  
며, 지방자치행정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  
는 주민자치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주민의 자치능력을 높여 주민과 행정과의  
협조를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2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의 실질화/현실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회를 잘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자리  
를 잡는 것은 단체자치에 치중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주민자치를 뿌리 내리  
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인 의사결정기구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다양한 세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3.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이중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와의 관계이며 주민과의 관계입니다. 주민과 관계가 없으면 주민회라 할 수 없으며 정부가 지배를 하면 자치회가 될 수 없습니다.

3-1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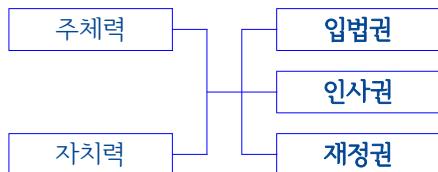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이뤄나가는 주민공동체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들만의 기구가 아닌, 실제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3-2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주민자치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되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닙니다. 주민자치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증진해 나가는 상호협력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자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의 주체가 되어야하고 자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자치를 할 수 없고 자치의 능력이 없어도 자치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의 주체역량과 자치역량으로 주민자치회는 입법권과 인사권 그리고 재정권을 필요조건으로 합니다.

3-3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회칙으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지역내 다양한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여하는 대표성 있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규약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4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와 임원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인사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방식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직접 선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임원선거를 통해서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인사권은 주민자치위원회들의 민주적 선출 과정을 통해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3-5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회비, 기부금, 수익 등)을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재정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회가 지자체, 동주민센터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하기 위한 보조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구역을 마을로 승인하고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고 지역의 일을 나의 일로 승인하여야 가능합니다.



주민이 나의 마을로 승인하지 아니하면 주민자치가 아니며 주민이 이웃으로 승인하지 않아도 주민자치가 아니며 주민들이 나의 일로 승인하지 않아도 주민자치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가 구역을 대표하여 마을의 공공을 구현할 때 비로소 주민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구역을 나의 마을로 승인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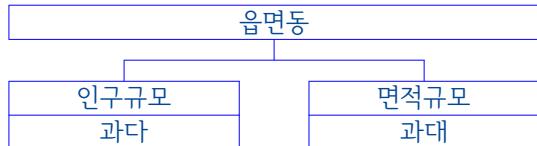
3-6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공공을 실현하는 지역조직으로, 주민의 공공을 실현하는 주민조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표성 없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회원) 직선제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등포구의 경우 일부 기초의원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견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의회에서 주민자치회 추진 관련 조례가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실제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와 임원이 운영하고 주민들도 무보수 비전임으로 참여를 하여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읍면동의 인구 규모는 주민자치회의 적정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고 면적은 과대합니다.

3-7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구역에 설치하였을 경우에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회 대표/임원이 읍면동 구역에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가를 포함하여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규모와 면적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읍면동 구역으로 하는 경우 도시는 인구가 너무 많고 농산어촌은 면적이 너무 넓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대비 주민자치회 구성 규모를 형식적으로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형해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별 주민자치회를 최대 50명 규모로 구성하고 있고, 5개동을 시범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등포구는 각 동마다 차이가 있지만 50명을 충족하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기준을 두되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를 행정계층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계층에 설치할 경우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이 중복되어 대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리가 행정보조기구의 자격으로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주민자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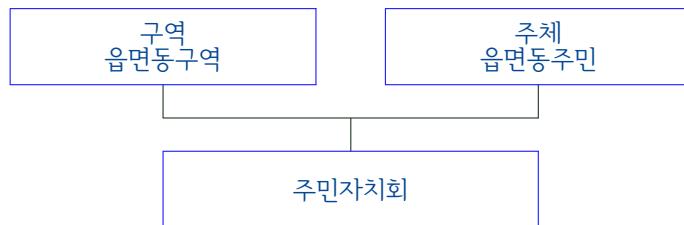
통리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면 지역밀착형이 가능하지만 이미 통리가 있습니다.

3-8 현행 행정 보조기구인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 리회로 혁신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있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마을단위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한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통·리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4.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주민자치회의 구역을 읍·면·동으로, 주체를 읍·면·동 주민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표준조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이하 표준조례)은 특별법의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빼버리고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4-1 모법인 ‘자치분권법’에서 정한 “·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만든 표준 조례에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세요.

‘지역주민’이라는 규정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을 해당 주소지에 두고 있는 사람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자신의 일터를 가진 사람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일하고, 장사하고, 활동하는 다양한 주민들도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표준조례안에서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규정은 지역주민을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주민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행안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면서 동자치지원관제도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동자치지원관의 임무는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기획 및 현장 지원, 주민자치회 구성 및 모임 네트워크 구성, 운영 촉진, 자치계획 수립 및 운영 기획, 주민자치회 협의•수탁•자치, 업무 기획, 자치구 주민 자치활성화 지속화 방안 연구, 주민자치회 회계 지원”이다.

주민자치회가 할 일을 동자치지원관이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읍면동장지배에서 이제는 동자치지원관의 이중 지배를 받고 있다.

동자치지원관에게 지원되는 것을 주민자치회에 직접 지원하라는 요구가 많다.

4-2 행안부가 권유하고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영등포구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5개동에서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 소속으로 5명의 동자치지원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자치지원관이 주민자치회 제도적으로 안착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의 동주민센터 주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의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5. 주민자치회법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5-1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관련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sup>1)</sup>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중 제25조(주민자치회)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지위에 대한 법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2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sup>2)</sup>을 제정하여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실질화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마련한 법률안은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의 복리증진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6. 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정된 권한, 한정된 지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자치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더 많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주민대표성을 갖춘 조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관심갖고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5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과의 협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 2)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읍·면·동 안에서 주민이 지역적인 공동활동을 함께 하며 자치할 수 있는 적정구역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주민”이란 마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란 마을을 단위로 설립되어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주민자치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으로 회원의 자격과 구분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가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민자치회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주민자치회의 설립 등) ①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마을 주민의 5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창립총회의 의결은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1조에 따른 주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로 분할하거나 다른 주민자치회와 통합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주민자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으로 하고 있는 마을

4. 사무 및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 자격과 구분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의결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7조(설립인가) ① 제5조제1항의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14일 이내에 시·군·구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③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장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자치회 임원) ① 주민자치회는 대표자 1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선출 방식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임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대표자의 직무 등) ① 대표자는 주민자치회의 모든 사무와 사업에 대해 주민자치회를 대표한다.

② 대표자는 정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주민총회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③ 대표자는 대표자의 이익과 주민자치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0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계의 감사와 직무의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회계나 직무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대표자가 그 기간 이내에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②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 정관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의 회원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사무 및 사업은 정관에서 대표자 또는 직원들에게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주민은 누구나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의 특정 구성원과 관계가 있는 의결의 경우 그 구성원은 표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비치 서류)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재산 목록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 주민자치회는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산 및 시설 보유) ① 주민자치회는 그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하여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해산) 주민자치회는 회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제16조(주민자치회 협의체) ① 주민자치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대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간의 소통·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시·군·구,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주민자치회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규약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7호 중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을 “주민자치회(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각각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